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2 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· 이학영 · 신영대

변재일 · 허 영 ·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 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.

아울러 「방송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 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 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3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3 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비파괴검사업의 등록) ①	제11조(비파괴검사업의 등록) ①
•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	
등록을 할 수 없다.	<u>,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	3
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	
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	
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	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<u>2년</u> 이	<u>3년</u>
지나지 아니한 자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
	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
	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
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
	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
	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